##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제20조 (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) ① ~ ③ (생략)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 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	제20조 (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카드사가 과실 없이 가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<u>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부담하여야하며,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 (약관변경)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 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, 카드사의 인터 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.  1.~ 4. (생략) ② ~ ④(생략)	제24조 (약관변경)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하고,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 (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, 신·구대비표 포함)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 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1.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(현행과 같음)